

1. 개정이유

예·결산 관련 학교법인 또는 학교 내부 절차 및 처리기한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으로부터 지방비 보조 및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도 일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등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및 결산 절차 완화(안 제12조·제16조 및 제23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과 그 설치학교의 예·결산 시 이사회 심의·의결 기한, 학교장의 예·결산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내부 절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할청 제출기한을 신설하고 내부 절차에 따른 기간 제한은 삭제함.

나. 지방계약법 적용 특례 신설(안 제40조의2)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교육부 관할인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감 관할인 학교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체결 시 일괄적으로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방비 지원 대상이고, 학교가 관할청으로부터 계약에 관해 원활한 지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관할 사립학교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다. 규제의 재검토 삭제(안 제61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12.30. ~ 2025.2.10.)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을 “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를 “편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를 “편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를 “예산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를 “종료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제4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계약법령 적용의 예외)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호 · 제6호 · 제8호 · 제12호, 제25조제1항각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 제2항, 제51조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6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u>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u>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 ----- ----- <u>예산 편성 전</u> ----- ----- -----.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u>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0일전 까지</u>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 ----- ----- <u>편성하여</u> ----- -----.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u>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u>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u>편성하여</u> ----- ----- -----.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u>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u>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u>예산안을</u> ----- ----- -----.
<신 설>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23조(결산) ① ----- ----- ----- -----.
1.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종료 후 ----- -----. -----.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심의·의결----- -----.
3.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3. <삭 제>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제40조의2(계약법령 적용의 예외)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항에 대해서는 「지

현행	개정안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의3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의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호·제6호·제8호·제12호, 제25조제1항각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2항, 제51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6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를 각각 적용한다. <삭제>